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

주식회사 케이티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약관의 적용)	4
제2조(용어의 정의)	4
제 2 장 전용계약	
제1절 통칙	
제3조(전용회선의 종류)	4
제4조(전용의 구분)	6
제2절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5조(청약)	6
제6조(승낙)	6
제7조(공동사용의 청약)	7
제8조(타인 사용의 청구)	7
제9조(상호접속의 청구)	8
제10조(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청구)	8
제11조(자가통신설비와의 접속청구)	8
제12조(분기접속의 청구)	9
제3절 개통및 점검	
제13조(전용회선의 개통)	9
제14조(전용회선의 운용점검)	9
제 3 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5조(이용정지)	10
제16조(이용중지)	
제17조(이용 휴지)	1.

제 4 장 계약의 변경

제18조(계약의 변경)	11
제19조(일시이용중단)	12
제20조(이용권의 승계)	12
제2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12
제22조(단말기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13
제 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	13
제24조(요금등 산정 방법)	14
제25조(요금등의 계산 구분)	14
제26조(요금등의 일할 계산)	14
제2절 요금등의 청구 및 납입	
제27조(요금등의 납입기일)	15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	15
제29조(요금등 납입의 특혜)	15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	15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	15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제32조(요금등의 감면)	16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 시설비의 반환)	16
제34조(요금등의 할인)	16
제 6 장 손해배상	
제35조(손해배상)	16

부 칙	
①(시행일)	۱7
A 7 5	
요 금 표	
[별표]	
I. 회선전용료 2	20
Ⅱ. 장비임대료	24
Ⅲ. 분기료 2	24
IV. 실비 2	25
V. 무선전용료 2	26
VI. CCTV 영상전송	26
VII. 요금감면 및 할인 2	27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olleh biz 전용회선(이하"전용회선"이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전용설비 : 이용계약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
- 2.전용회선 : 이용계약에 의하여 계약자가 이용하는 전기통신 회선
- 3.수용구역 : 동일 가입구역안에 2이상의 전화교환국이 있는 경우에 전화교환국별로 전용회선을 수용하는 구역을 지정한 지역
- 4.분기 : 전용회선의 중도에서 계약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전용회선을 연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는 것
- 5.가입자선로 : 전화국의 주배선반으로 부터 계약자의 구내 인입단자까지를 연결하는 선로
- 6.회선종단장치(DSU등): 회선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회선과 단말 기기의 접속 또는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제 2장 전용계약 제1절 통칙

제3조(전용회선의 종류)계약자가 전용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및 규격		내 용
	제1규격	전송주파수 대역이 300헬즈부터 3400헬즈까지의 회선
1.아날로그	제2규격	전송주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6400헬즈까지의 회선
라디오 방송회선	l AISサイ	전송주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10000헬즈까지의 회선
0040	제4규격	전송주파수 대역이 50헬즈부터 15000헬즈까지 (스테레오 방송포함) 의 회선

종류 및 규격		내 용
2.저속도 회선	제1규격	매초당 300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비상벨 회선
3.중속도	제1규격	매초당 9600비트까지 음성 및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회선	제2규격	매초당 56/64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규격	매초당 12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2규격	매초당 192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3규격	매초당 256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4규격	매초당 384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4.고속도	제5규격	매초당 44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회선	제6규격	매초당 512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7규격	매초당 768킬로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8규격	매초당 1.02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9규격	매초당 1.54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0규격	매초당 2.048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규격	매초당 4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2규격	매초당 6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3규격	매초당 8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4규격	매초당 1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5규격	매초당 2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5.초고속도	제6규격	매초당 3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회선	제7규격	매초당 45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8규격	매초당 100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9규격	매초당 155메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0규격	매초당 1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1규격	매초당 2.5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제12규격	매초당 10기가비트까지 비음성통신이 가능한 회선
6. 무선설비 전용		이동체통신, 동시통보용 통신의 전송이 가능한 무선설비 (무선설비에 연결되는 유선회선을 포함)의 전용
7. CCTV	1규격	CCTV 영상을 동선을 사용한 xDSL 방식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영상전송	2규격	CCTV 영상을 광CA을 사용한 xDSL 방식 등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 제4조(전용의 구분)①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전용회선은 이용구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 1.시내전용: 전용회선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가입구역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 2.시외전용 : 시내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간에 설치된 회선의 전용
- ②전용회선은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 1.장기전용 : 계약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전용
 - 2.단기전용 : 계약기간을 1월 미만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전용(제3조 제4,5호제외)

제2절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5조(청 약)①전용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화,팩스,e-mail,방문,우편 또는 기타 회사가 인정한 방식으로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청약서(케이티가 별도로 정하는 서식)
- 2.법인의 경우 청약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청약자와 요금납입책임자가 다른 경우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케이티는 전용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청약 전에 전용회선구성 가능 여부에 대해 전화, 팩스, e-mail ,우편 등으로 문의할 경우 30일 이내에 전용회선 구성 가능 여부 및 불가할 경우 해당 사유를 통보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통보가 불가할 경우, 고객과 합의하여 정한 기한내에 통보합니다.
- 제6조(승 낙)①케이티는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②케이티는 청약사항이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조건부 가입구역인 경우 청약자가 그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케이티는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케이티가 전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관로, 설치장소 등 설비를 청약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④무선설비전용 청약에 대한 승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동시통보용으로 이용하는 무선설비
- 2.다수지점(전용구간이 다수구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유선통신설비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점)간의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무선설비
- ⑤케이티는 청약사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청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1.개통예정일
- 2.요금 등에 관한 사항
- 3.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 4.기타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동사용의 청약)①전용회선의 공동사용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용을 하고 자 하는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사용 할 자가 연서하여 케이티에 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 ②하나의 전용회선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공공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 2.언론사,방송사,통신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한 자 등 언론,방송,출판 관련기관 상호간
 - 3.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 래 관계가 있는 자 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 4.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재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 5.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 6.위 각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 ③케이티는 공동사용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 이를 대표자 에게 제시하여 공동사용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서류를 케이티에 제출하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제8조(타인사용의 청구)전용회선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는 것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국가비상사태하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군사기관,경찰기관,소방기관,재해대책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영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사용하는 경우
 - 3.일방향 전송을 하는 경우
 - 4.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 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상호접속의 청구)①계약자는 1의 전용회선의 단말에 통신설비(구내교환설비를 포함합니다.)등을 접속하여 계약자의 다른 회선과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호접속 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접속할 장소(전용설비의 단말기기가 설치된 동일구내의 장소에 한합니다. 다만, 직결식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상호접속 방법 및 구성도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제외합니다.
- 1.동일인의 전용에 속하지 않는 다른 전용회선 상호간
- 2.시외전용회선 양단측과 공중전화교환망 상호간
- 3.기술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 제10조(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청구)①계약자는 전용회선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계약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 이어야 합니다.)에 접 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케이티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계약자는 전용설비를 타인사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 교환설비와 접속 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8조 제4호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③시외전용설비 양단측에 구내교환설비를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내교환설비 1단측에 국선과 접속하지 않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통 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11조(자가통신설비와 접속청구)전용회선과 자가통신설비간의 접속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1.자가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로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그의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간에 이용하는 경우 또는 설립목적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상호간에 이용하는 경우 2.기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목적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
- 제12조(분기접속의 청구)①무선설비 전용을 제외한 계약자는 1의 전용회선 중도에서 회선을 분기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분기하여 다른 전용회선과 접속하여 이용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기접속 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1.분기할 장소
 - 2.분기방법 및 분기구성도
-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현재 설치된 통상의 전용설비 이외의 특별한 전용설비의 의 신설을 요하는 때에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개통 및 점검

- 제13조(전용회선의 개통)①케이티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 이경우 케이티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 ②계약자와 협의가 곤란한 경우 케이티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 ③청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예정일 5일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케이티는 개통예정일 또는 청약서 접수후 30일 이내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청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재 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 합니다.

제14조(전용회선의 운용점검)케이티는 기본약관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후에 다음사항을 운용 점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신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 2.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지 여부
- 3.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이용하는 지 여부

제 3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 제15조(이용정지)①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회선 이용의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 1.요금납부책임자가 전용요금과 가산금 등의 이행최고를 받고 최초의 요금납입기일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2.케이티가 설치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부당하게 접속하여 이용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케이티는 전용의 정지기간중에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용의 정지를 해제합니다.
- 제16조(이용중지)①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용설비를 다른 전기 통신업무 또는 중요한 통신업무에 이용할 필요가 있는 때. 전기통신설비의 장애 또는 통화폭주 등으로 통신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전용회선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에 의하여 전용회선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사유,기간, 대상지역, 대상설비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제1항의 경우 중지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순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제 1순위
 - 가.국가안보
 - 나.군사 및 치안
 - 다.민방위경보 전달
 - 라.전파관리
 - 2.제 2순위
 - 가.재해구호
 - 나.전기통신, 항해안전, 기상, 소방, 전기, 가스, 수도, 수송 및 언론
 - 다.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 라.주한외국공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업무
 - 3.제 3순위
 - 가.자원관리대상업체 및 방위산업체의 업무
 - 나.정부투자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
 - 4.제4순위 :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전용
- 제17조(이용휴지)①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용회선의 이용을 휴지합니다.
 - 1.시설 및 기술상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구외설변 청구에 응할 수 없을 때
 - 2.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전용회선을 타에 전용할 때
- ②케이티는 제1항 각호의 유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전용회선을 부활합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 제18조(계약의 변경)①계약자는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설치장소
 - 2.회선의 종류 및 규격
 - 3.전용회선의 이용개시 시각과 이용시간(시간전용에 한합니다.)

- 4.전용기간
- 5.이용구간(회선구성이 가능한 때에 한합니다.)
- 6.단독사용을 공동사용으로 공동사용을 단독사용으로 그 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공동사용의 전용자 수의 증감
- ②설치장소 변경시 기본약관에서 정한 구내설변시의 같은 구내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하나의 건물과 그 부지
- 2.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m이내(케이티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m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에 있고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이상의 건물과 그 부지(도로 또는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 제19조(일시 이용중단)①계약자 사정으로 이용중인 전용회선을 일정 기간동안 이용 중단을 케이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조건부 가입구역 등의 구외설변 청구에 있어서 계약자 부담 시설비를 납입기일내에 납입하지 않거나 시설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용중단으로 봅니다.
 - ③케이티는 기본약관 제33조 제2항의 일시이용 중단기간을 초과 한 때에는 그 전용 회선을 타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 ④일시이용중단기간이 만료되어 부활신청후 1개월이내 설치장소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제20조(이용권의 승계)①상속,합병,분할,영업양수 등으로 계약자의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케이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요금 납입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위승계 신고시 대표자 선정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①계약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

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이용계약 해지 청구서를 케이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제합니다.

- 1.이용계약이 확정된후 장치비,계약자부담시설비 등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
- 2.기본약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승낙유보 사유에 해당하는 청약임이 확인된 때 ③케이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자가 부당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전용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때개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2.다른 선로기기등을 부착하여 당초 계약된 규격 이상으로 이용하여 전용요금을 불법 면탈하였을 때
- 3.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용설비의 운영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4.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그 정지사유를 1월이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당해년도 3회이상 정지당한 때
- 제22조(단말기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①전용회선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기기 등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유지보수는 계약자가 담당합니다. 다만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②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설치하거나 변경등을 하는 때에는 정보 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그 설치 및 설치장소 변경 등의 공사는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5장 요금등

제1절 통칙

제23조(요금등의 종류)①계약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케이티에 납입해야 할 요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 1.회선전용료 :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2.장비임대료 : 케이티가 제공하는 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3.분기료 : 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 이용하는 경우 매월 일 정액을 납입하는 요금

- 4. 장치비: 서비스의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5.계약자 부담시설비 :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자 부담 조건으로 승낙시 장치비 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
- ②제3조 규정 및 위 제1항에 의한 요금 및 적용기준, 적용대상 등은 "별표"와 같습니다.
- 제24조(요금등 산정방법)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용자가 단기전용의 기간내에 그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단기전용 요금을 적용 산정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장기전용의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 ②회선전용료는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시내 및 시외요금으로 구분하고 시내 수용구역 외 및 시외요금은 거리단계별 요금으로 하며, 거리는 케이티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한 과금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이용하는 때에는 그 분기된 구간에 따라 전용회선료 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④시간단위 전용요금 산정 : 삭제
- ⑤이용의 정지,휴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요금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 ⑥일시이용중단회선은 일시이용중단기간중 회선전용료의 30%를 납부 하여야 합 니다
- 제25조(요금등의 계산구분)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한 요금등은 즉납, 일액, 월액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합니다.
 - 1.단기전용의 일액으로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장기전용의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액으로 합니다.
 - 2.장기전용의 월액으로 하는 요금등의 계산은 매월1일 부터 말일(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까지를 1월분의 요금 등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개시일, 변경 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종료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26조(요금등의 일할계산)①요금 등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등의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 ②계약자의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등이 요금월의 중도에 변동이 있는 때는 그 요금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정액의 일할로써 산정합니다.

제 2절 요금등의 청구 및 납입

- 제27조(요금등의 납입기일)①전용회선이용과 관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제23조 제1항의 요금등은 사용월의 말일이내에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 ②요금납입일이 일정하지 않는 단기 및 계약자부담시설비 등에 대한 요금 등은 케이티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정하여 청구합니다.

제28조(요금등의 납입처)계약자는 납입청구서에 의한 요금등을 납입기일내에 케이티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29조 (요금등 납입의 특례)요금등의 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 국기관 또는 케이티가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 니다.
- 제30조(요금등 납입의 연대책임)제7조의 공동사용 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등은 그 납입하여야 할 요금등에 대하여 각각 연대책임으로 합니다. 이경우에 요금 청구는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제3절 면탈요금등의 징수

- 제31조(면탈요금등의 징수)①케이티가 면탈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 1.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 2.계약변경을 하지 않고 전용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 계약당시 규격이 상으로 변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기본약관 제41조 및 본 약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절 요금등의 감면 및 반환

- 제32조(요금등의 감면)①국가비상사태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멸실된 경우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장치비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②전용회선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군사.치안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과 국가지도 통신 용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케이티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용회선
- 2.체신사업 경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인명, 재산의 위험방지 또는 재해의 긴급구조구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4.전시에 군 작전상 필요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 5.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 6.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제2항에 의하여 요금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구체적인 대상기관,적용방법 및 감면 요율은 "별표"와 같습니다.
- 제33조(미공사분의 계약자부담시설비의 반환)케이티는 전용설비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전용계약의 해제 또는 전용설비의 설치장소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그 설치공사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계약자부담 시설비를 반환합니다.
- 제34조(요금등의 할인)케이티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용요금을 할인 합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35조(손해배상)①계약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계약자가 케이티에 통지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날로부터 2시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회선이용료의 최저 3배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배상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월액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유가 불가항력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전항의 배상방법은 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요금중에서 감액처리 합니다.

부칙

(1992. 3. 11 공시 제13호)

- ①(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②(폐지규정)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여규정은 이를 폐지합니다.
- ③(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설비의 전용 및 대여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절차,결정 및 공시등은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봅니다. 데이타통신에 관한 회선의 전용은 데이타통신에 관한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부칙

(1992. 8. 1 공시 제22호)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3. 2. 9 공시 제7호)이 약관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4. 1. 10 공시 제4호)

- ①(시행일)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이전에 행한 처분등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합니다.

부칙

(1994. 3. 1 공시 제14호)

이 약관은 공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6. 12. 31 공시 제50호)

이 약관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1997. 12. 30 공시 제48호)

- ①(시행일)이 약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경과조치)이약관 시행전에 계약한 광대역회선은 본 약관 시행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전용회선으로 변경해야 하며, 변경전까지는 종전요금을 적용합니다.

부칙

(1998. 3. 21 공시 제8호)

- ①(시행일)이 약관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경과조치)이 약관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제공대가 산정방법

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 기준고시9제1996 -113호: '96.12.27)를 개정 하기전까지는 동고시 부칙1 제3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부칙

- ①(시행일)이 약관은 2000년 8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경과조치)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통신용회선은 2000년도말까지 요금을 면제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2001년도말까지 회선전용료의 6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전용료의 7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 전용료의 4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회선 전용료의 30%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국가지도통신용 회선은 중속도회선 회선전용료의 30%, 고속도 및 초고속도 회선 회선전용료의 27%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국가기관 통신용 회선의 감면율은 2006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도 통신용 회선의 감면율은 2007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6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별 표]

요 금 표

I. 회선전용료

1. 아날로그 라디오방송회선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장기전용	- (월액)		
종별		제 1	규격	제 2 규격			
			단방향	양방향	단방향	양방향	
	수용	· 구역내	29,100	43,700	43,700	65,500	
시	수용	1~6 km	32,900	49,400	49,400	74,100	
내	구역 외	7~12 km	34,200	51,300	51,300	76,900	
		13 km~	35,500	53,200	53,200	79,700	
	~10km		90,100		135,100		
	~30 km		157,600		236,300		
.1	~	50 km	220,000		330,000		
시 외	~ [100 km	347,500		521,100		
러	~ '	200 km	394,100		591,100		
	~300 km ~400 km		441,700		662,500		
				,900	715,300		
	40)1 km~	500	,800	751,200		

				장기전용	용 (월액)		
종별		제 3	규격	제 4 규격			
			단방향 양방향		단방향	양방향	
	수	용구역내	58,200	87,300	87,300	131,000	
시	수용	1~6 km	65,800	98,700	98,700	148,100	
내	구역	7∼12 km	68,400	102,500	102,500	153,800	
	외	13 km~	70,900	106,300	106,300	159,400	
	~10km		180,200		270,300		
	~30 km		315,100		472,600		
	~50 km		440,000		659,900		
시	~100 km		694,900		1,042,400		
외	~	·200 km	788,200		1,182,300		
	~300 km		883,400		1,325,100		
	~	400 km	953,800		1,430,700		
	4	01 km~	1,00	1,600	1,502,400		

ㅇ 적용방법

- 시외전용 : 단,양방향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 스테레오 라디오방송회선 : 해당 라디오방송회선 규격요금의 2배 적용

2. 저속도회선

* 부가세별도(단위:원)

			장기전용	· (월액)			
종별		·별	제 1 규격 (50/300bps)				
			2 선식	4 선식			
	수용구역내		18,500	27,600			
시	수용	1~6 km	20,900	31,300			
내	구역	7~12 km	21,700	32,300			
	외	13 km~	22,500	33,600			
	~10km		56,900				
	~30 km		99,500				
	~50 km		139,100				
시	~100 km		219,700				
외	~200 km		249,200				
	~300 km		279,200				
	~	400 km	301,600				
	4	01 km~	316,	,800			

ㅇ 이용대상 : 보안 및 경비 목적의 비상벨용 회선

ㅇ 적용방법

- 시외전용 :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3. 중속도회선

* 부가세별도(단위:원)

				장기전용 (월액)		
	종별		제 1	제 1 규격		
			2.4/4.8/	9.6Kbps	56/64Kbps	
			2 선식	4선식	50/04Kbps	
	수용구역내		37,700	56,700	131,000	
시	み ぬコ	1∼6 km	42,700	64,200	148,100	
내	수용구 역외	7∼12 km	44,300	66,600	153,800	
	역위	13 km~	46,000	69,200	159,400	
	~10km		117,100		270,300	
	(~30 km	204,	472,600		
	(~50 km	286,000		659,900	
시외	~	100 km	451,700		1,042,400	
기퍼	~	200 km	512,	512,300 1,182,5		
	~300 km		574,	574,200 1,325,100		
	~	400 km	619,	619,900		
	401 km~		651,	600	1,502,400	

ㅇ 적용방법

- 시내전용 6선식 : 2선식 회선전용료의 2배 적용 - 시외전용 : 선식에 관계없이 동일요금 적용

4. 고속도회선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	장기전용 (월의])	
	콯	- 별	제 1 규격	제 2 규격	제 3 규격	제 4 규격	제 5 규격
			128Kbps	192Kbps	256Kbps	384Kbps	448Kbps
	수	용구역내	144,800	186,100	246,000	287,000	301,700
시	수용 1~6 km		163,800	210,500	278,000	324,400	341,200
내	구역	7~12 km	170,000	218,500	288,700	336,900	354,200
	외 13 km		176,300	226,700	299,400	349,300	367,300
	~10km		286,600	368,500	491,400	573,300	614,200
	,	~30 km	505,700	650,200	867,000	1,011,500	1,083,700
	,	~50 km	706,300	908,100	1,210,800	1,412,600	1,513,500
시	~	100 km	1,125,900	1,447,600	1,930,200	2,251,900	2,412,700
외	~200 km ~300 km ~400 km		1,379,300	1,773,400	2,364,600	2,758,700	2,955,700
			1,545,900	1,987,600	2,650,200	3,091,900	3,312,700
			1,669,100	2,146,000	2,861,400	3,338,300	3,576,700
	4	01 km~	1,752,800	2,253,600	3,004,800	3,505,600	3,756,000

			장기전용 (월액)					
	종	·별	제 6 규격	제 7 규격	제 8 규격	제 9 규격	제 10 규격	
			512Kbps	768Kbps	1.024Mbps	1.544Mbps	2.048Mbps	
	수	용구역내	341,900	398,500	469,500	586,900	745,200	
시	수용	1~6 km	386,600	450,500	530,700	663,400	842,400	
내	구역	7∼12 km	401,400	467,800	551,200	689,000	874,800	
	외 13 km~		416,300	485,100	571,600	714,500	907,200	
	~10km		696,100	819,000	923,800	1,154,800	1,539,700	
	^	-30 km	1,228,200	1,445,000	1,630,000	2,037,500	2,716,600	
	^	-50 km	1,715,300	2,018,000	2,276,300	2,845,400	3,793,800	
시	~	100 km	2,734,400	3,217,000	3,628,800	4,536,000	6,048,000	
외	~200 km		3,349,800	3,941,000	4,445,400	5,556,800	7,409,100	
	~	300 km	3,754,400	4,417,000	4,982,400	6,228,000	8,304,000	
	~	400 km	4,053,600	4,769,000	5,379,400	6,724,300	8,965,700	
	4	01 km~	4,256,800	5,008,000	5,649,000	7,061,300	9,415,000	

ㅇ 적용방법

- 시내/시외 : 4선식 1회선 기준

5. 초고속도회선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장기전용 (월액)						
종별		제 1 규격	제 2 규격	제 3 규격	제 4 규격	제 5 규격	제 6 규격		
			4Mbps	6Mbps	8Mbps	10Mbps	20Mbps	30Mbps	
	수용	구역내	1,022,400	1,322,000	1,702,600	1,910,000	2,707,000	3,344,000	
시	수용	1~6 km	1,155,400	1,494,000	1,925,400	2,160,000	3,060,000	3,780,000	
내	구역외	$7\sim 12~\mathrm{km}$	1,199,500	1,551,000	1,998,500	2,242,000	3,177,000	3,925,000	
	十号书	13 km~	1,243,600	1,608,000	2,072,500	2,325,000	3,295,000	4,070,000	
	~10km		1,955,800	2,529,000	3,258,900	3,656,000	4,875,000	6,094,000	
	~30 km		3,450,000	4,461,000	5,747,700	6,448,000	8,599,000	10,749,000	
	~50 km		4,818,800	6,231,000	8,027,000	9,005,000	12,007,000	15,009,000	
시외	~100 km		7,681,000	9,932,000	12,795,100	14,354,000	19,138,000	23,924,000	
714	~200 km		9,406,400	12,163,000	15,669,000	17,578,000	23,438,000	29,298,000	
	~300 km		10,543,200	13,633,000	17,563,200	19,703,000	26,270,000	32,838,000	
	~4(00 km	11,384,600	14,721,000	18,964,500	21,275,000	28,367,000	35,460,000	
	401	km~	11,952,300	15,455,000	19,911,100	22,337,000	29,783,000	37,230,000	

			장기전용 (월액)						
	종별		제 7 규격	제 8 규격	제 9 규격	제 10 규격	제 11 규격	제 12 규격	
			45Mbps	100Mbps	155Mbps	622M/1Gbps	2.5Gbps	10Gbps	
	수용	용구역내	4,527,000	6,450,000	9,054,000	12,901,000	18,333,000	26,177,000	
시	人 ۵	1~6 km	5,117,000	7,291,000	10,235,000	14,585,000	20,726,000	29,593,000	
내	수용 구역외	7∼12 km	5,313,000	7,571,000	10,628,000	15,144,000	21,520,000	30,727,000	
	十号刊	13 km~	5,510,000	7,851,000	11,022,000	15,705,000	22,319,000	31,868,000	
	~	10km	8,843,000	10,970,000	15,553,000	19,633,000	27,717,000	39,576,000	
	~	-30 km	15,596,000	19,347,000	27,427,000	34,623,000	48,880,000	69,793,000	
	~	-50 km	21,778,000	27,018,000	38,299,000	48,348,000	68,255,000	97,458,000	
시	~	100 km	34,712,000	43,062,000	61,045,000	77,061,000	108,793,000	155,341,000	
외	~	200 km	42,511,000	52,738,000	74,759,000	94,374,000	133,234,000	190,239,000	
	~	300 km	47,647,000	59,109,000	83,791,000	105,775,000	149,330,000	213,222,000	
	~	400 km	51,453,000	63,828,000	90,480,000	114,221,000	161,253,000	230,247,000	
	40	01 km~	54,020,000	67,014,000	94,996,000	119,920,000	169,299,000	241,735,000	

ㅇ 적용방법

- 시내/시외 : 4선식 1회선 기준

※ 단, 4M~30M, 100M는 Eos회선(Ethernet방식)으로 서비스 제공

☞ 단기전용회선의 요금(장비임대료 포함)

단기전용회선의 요금은 개통 첫째날 장기사용 월액의 20%, 둘째날부터는 매 1일 마다 장기사용 월액의 3.33%를 적용함. 이 경우 그 액수가 장기사용의 월액을 초과 할 때에는 장기사용의 월액으로 합니다.

Ⅱ. 장비임대료

o 개념: KT가 제공하는 종단장치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이 이용료 부가가치세 별도(단위 :원)

구 분	장기전용(월액)	刊 고
○ 56/64Kbps 회선이하 제공용	4,000 원	장비 1대당 적용요금
○ 128Kbps~1024Kbps 회선 제공용	8,000 원	경비 1 대당 식용요급

- 백업기능 등이 추가된 특수회선 종단장치는 실비 적용

Ⅲ. 분기료

 개념 : 전용회선을 중도에서 분기하여 단말기기를 설치 이용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요금

ㅇ 요금 부가가치세 별도(단위 :원)

구 분	장기전용(월액)
○ 중속도(제1규격) 음성회선, 라디오방송회선 (제1규격)	4,000 원
ㅇ 라디오방송회선(제 2,3 규격)	25,000 원
ㅇ 라디오방송회선(제 4 규격)	30,000 원

- 회선분기시 분기개소에서 분기단말까지의 회선에 대한 요금은 해당 회선 전용료를 별도로 적용함

Ⅳ. 실비

1. 장치비

개념: 서비스의 신규청약,설변,규격변경 청구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 요금 * 부가가치세 별도

ની દ્રી દ્રી ધી દ	신규	설변 (1 단측기준)		비고	
대상서비스	(1회선기준)	구내	구외	1177	
아날로그라디오방송회선, 저속도회선,중속도회선	56,000 원	10,000 원	28,000 원	○ 4 선식 기준	
○ 고속도회선(128K~2.048M)	200,000 원	50,000 원	100,000 원	라디오방송회선은	
○ 초고속도회선(~40Mbps 까지)	1,000,000 원	150,000 원	500,000 원	양방향 기준	
○ 초고속도회선(45Mps 이상~)	1,940,000원	290,000 원	970,000 원		

ㅇ 적용방법

- 2선식(라디오방송회선 단방향 포함) : 4선식 요금의 0.5배

- 6선식 : 4선식 요금의 1.5배

※ 실제로 설치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제18조에 의거 고속회선 규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청구합니다.

2. 계약자 부담 시설비

ㅇ 개 념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 전용계약의 청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의 승낙을 얻은자가 장치비외에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 ㅇ 산정 방법
 - 실비로 산정(부가가치세 별도)
 - 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각각 분담하여야 할 시설비는 실비로 산정한 시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선수로 나눈액에 전용회선수를 곱하여 산정
- ㅇ 기설설비의 이용에 대한 분담금
 - 시설자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그 설치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설설비를 설치한 때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그 설비에 대한 분담금을 납입. 다만, 기설설비의 시설자가 새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설비의 분담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분담금의 산정은 실비로 산정된 시설비 총액을 그 시설을 설치한 때의 전용 회선수와 새로 이용하는 전용회선수를 합하여 나눈액을 새로 이용하는 전용 자의 전용회선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기설설비의 이용을 위한 시설비의 납입이 있을때에는 그 시설비를 기설설비의 설치자에게 반환함.

V. 무선설비 전용

ㅇ 개 념 : 무선설비 사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ㅇ 요 율

*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워)

구 분	요 금
전용료	{(기본설비 또는 장치비 : 내용년수) + 이자비 (설비비 또는 장치비 ×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년간시설관리비(년간시설관리용 물자비+ 동 인건비 + 동 기타비용)} × { 1+ 0.07(간접비)} : 12월
장치비	(물자비 + 인건비 + 부속설비 + 기타 비용) × {1 + 0.07(간접비)}

ㅇ 적용 방법

- 전용료 : 요금 공식에 의해 정해진 실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하는

비용으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만, 중도인경우는 일할계산

- 장치비 : 장치에 대한 설치 및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VI. CCTV 영상전송

ㅇ 이용료

부가가치세 별도(단위:원)

구 분		1 규격(동선)	2 규격(광 CA)	비고	
2]1]] z] ()	수용구역내	120,000 원	180,000 원	1회선당 카메라 1대	
시내전용	수용구역외	160,000 원	320,000 원	"	

※ 동일장치에 카메라 추가 설치시 1 대당 60% 요금적용

○ 장치비: 100,000 원/1 단측기준(개통, 설변, 규격변경, 카메라 추가시 청구)

ㅇ 장비임대료 : 8,000 원/월

○ 기타 시설비 : 카메라, 모니터, 관제센타 구축, 관로시설 인입 등 부대장비에 대한 설치 비용은 실비계산

Ⅶ. 요금감면 및 할인

1. 요금 감면

가. 군사 및 치안기관 등

ㅇ 적용대상 서비스 : 중속도(제1규격) 음성회선

ㅇ 적용대상기관 : 군사,치안기관(미8군포함), 수방 및 재해대책기관, 국가정

보원, 청와대 및 국무총리 경호용, 민방공 및 소방기관

○ 감면율 : 회선전용료 30%(장치비 제외)

나. 국가기간통신망 통합기관

- ㅇ 감면대상기관 : 주식회사 케이티와 국가기간통신망 통합협정을 체결한 기관
- 다.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50%
- 라. 정보통신의 이용촉진과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용통신
 - ㅇ 감면대상
 - 국가기관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보문화의 확산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 새로 운역무 또는 전기통신망의 고도화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
 - 정보이용의 활성화,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통신에 관한 훈련,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 ㅇ 적용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자
 - ㅇ 감면율 : 시외회선전용료의 30%

마. 체신사업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ㅇ 감면대상회선 : 체신사업과 관련된 시외전용회선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30%

바. 기간통신사업자 시내 설비제공회선

ㅇ 감면대상 : 기간통신사업자의 시내 설비제공 회선용

ㅇ 감면율 : 회선전용료의 5%

사.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용회선

○ 감면대상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속 FAX 용 전용회선

○ 감 면 율 : 시내 40%, 시외 50%

○ 대상회선 : 고속도회선 제 9, 10 규격(고속 FAX 용에 한함)

아.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

ㅇ 감면대상 : 국가지도통신용 운용업무 협정에 의한 회선

○ 감 면 율 : 중속도회선 30%

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1) 감면대상기관 : 전자정부법에 의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감면대상회선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회선 및 국가기관과 연계된 민간 회선

3) 기본회선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시외						
구분	시내	0.017 - 41-31	FOIZ alan			00017 1 2	00017 = -1	
				100Km 이내				
9.6Kbps	48,000	153,000	214,000	338,000	384,000	430,000	464,000	
64Kbps	96,000	307,000	428,000	677,000	768,000	861,000	929,000	
256Kbps	180,000	547,000	764,000	1,216,000	1,489,000	1,668,000	1,803,000	
384Kbps	210,000	639,000	889,000	1,417,000	1,736,000	1,950,000	2,103,000	
512Kbps	251,000	711,000	995,000	1,444,000	2,111,000	2,364,000	2,554,000	
768Kbps	292,000	718,000	1,016,000	1,471,000	2,484,000	2,786,000	3,006,000	
1Mbps	297,000	726,000	1,038,000	1,497,000	2,760,000	3,140,000	3,394,000	
1.5Mbps	299,000	729,000	1,048,000	1,511,000	2,773,000	3,298,000	3,549,000	
2Mbps	301,000	733,000	1,059,000	1,524,000	2,786,000	3,456,000	3,704,000	
4Mbps	479,000	964,000	1,363,000	1,925,000	3,395,000	4,180,000	4,476,000	
5Mbps	567,000	1,080,000	1,514,000	2,126,000	3,699,000	4,541,000	4,861,000	
6Mbps	610,000	1,177,000	1,657,000	2,332,000	4,069,000	5,000,000	5,352,000	
8Mbps	697,000	1,373,000	1,941,000	2,743,000	4,809,000	5,916,000	6,333,000	
10Mbps	783,000	1,568,000	2,227,000	3,155,000	5,549,000	6,832,000	7,314,000	
12Mbps	842,000	1,772,000	2,530,000	3,592,000	6,409,000	7,917,000	8,477,000	
14Mbps	902,000	1,976,000	2,834,000	4,028,000	7,269,000	9,004,000	9,639,000	
16Mbps	961,000	2,181,000	3,137,000	4,465,000	8,130,000	9,726,000	10,503,000	
18Mbps	1,021,000	2,385,000	3,441,000	4,901,000	8,991,000	10,267,000	11,087,000	
20Mbps	1,080,000	2,588,000	3,745,000	5,338,000	9,643,000	10,807,000	11,670,000	
22Mbps	1,160,000	2,794,000	4,049,000	5,848,000	10,393,000	11,648,000	12,578,000	
24Mbps	1,235,000	2,990,000	4,341,000	6,353,000	11,143,000	12,488,000	13,486,000	
26Mbps	1,305,000	3,177,000	4,619,000	6,854,000	11,893,000	13,329,000	14,393,000	
28Mbps	1,369,000	3,354,000	4,885,000	7,350,000	12,643,000	14,169,000	15,301,000	
30Mbps	1,429,000	3,522,000	5,138,000	7,842,000	13,393,000	15,010,000	16,209,000	
35Mbps	1,483,000	3,700,000	5,417,000	8,290,000	14,106,000	15,655,000	16,904,000	
40Mbps	1,537,000	3,878,000	5,696,000	8,738,000	14,819,000	16,299,000	17,599,000	
45Mbps	1,644,000	4,234,000	6,254,000	9,634,000	15,067,000	16,436,000	17,745,000	

¬ н	2] 1]])	시외		
구분	시내	30Km 이내50Km 이니	l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50Mbps	1,772,000	4,410,000 6,483,000	9,962,000	16,286,000	17,831,000	19,252,000
55Mbps	1,849,000	4,484,000 6,550,000	10,014,000	16,543,000	18,719,000	20,211,000
60Mbps	1,926,000	4,557,000 6,616,000	10,065,000	16,799,000	19,606,000	21,169,000
65Mbps	2,003,000	4,631,000 6,683,000	10,117,000	16,839,000	20,261,000	21,778,000
70Mbps	2,080,000	4,704,000 6,749,000	10,169,000	16,879,000	20,915,000	22,386,000
75Mbps	2,157,000	4,793,000 7,143,000	10,701,000	17,203,000	21,273,000	22,789,000
80Mbps	2,234,000	4,883,000 7,536,000	11,233,000	17,526,000	21,631,000	23,191,000
85Mbps	2,238,000	4,972,000 7,632,000	11,361,000	17,850,000	21,989,000	23,594,000
90Mbps	2,243,000	5,061,000 7,729,000	11,488,000	18,173,000	22,347,000	23,996,000
100Mbps	2,251,000	5,240,000 7,921,000	11,743,000	18,820,000	23,063,000	24,801,000
155Mbps	2,836,000	6,239,000 9,645,000	15,666,000	22,195,000	26,939,000	28,825,000
200Mbps	3,171,000	6,975,000 10,783,000	17,514,000	24,812,000	30,116,000	30,842,000
300Mbps	3,915,000	8,609,000 13,311,000	21,620,000	30,630,000	35,252,000	35,324,000
400Mbps	4,231,000	9,487,000 14,744,000	24,033,000	34,106,000	39,735,000	39,807,000
500Mbps	4,548,000	10,365,000 16,176,000	26,445,000	37,582,000	44,218,000	44,291,000
600Mbps (622Mbps)	4,933,000	11,436,000 17,924,000	29,389,000	41,823,000	49,687,000	49,760,000
700Mbps	5,269,000	12,215,000 19,145,000	31,390,000	44,672,000	51,672,000	52,350,000
800Mbps	5,699,000	13,213,000 20,709,000	33,956,000	48,323,000	54,216,000	55,669,000
900Mbps	6,130,000	14,211,000 22,274,000	36,522,000	51,204,000	55,057,000	57,219,000
1Gbps	6,561,000	15,209,000 23,839,000	39,088,000	52,304,000	56,339,000	59,193,000
1.5Gbps	8,090,000	20,287,000 28,328,000	46,548,000	55,647,000	60,130,000	62,945,000
2Gbps	8,486,000	21,235,000 29,652,000	48,723,000	58,990,000	63,923,000	66,698,000
2.5Gbps	8,883,000	22,182,000 30,975,000	50,898,000	62,334,000	67,714,000	70,451,000
5Gbps	10,920,000	27,272,000 38,081,000	63,355,000	79,141,000	84,696,000	86,612,000
10Gbps	14,996,000	37,449,000 52,291,000	88,267,000	112,756,000	118,659,000	118,932,000

나) 이용요금 할인

ㅇ 장기계약 할인

구분	2년	3년	5년
할인율	5%	10%	12%

- 상기 장기계약할인율은 2013.4.1일 이후 청약건에 한하여 적용
- 장기계약할인은 다량이용과 다회선이용 할인 중 한가지와 중복 적용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 할인반환금=(할인전 월이용료×사용개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 ㅇ 다량이용 할인(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5백~1천만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할인율	1%	2%	3%	5%	7%	8%	10%	15%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3회선이상~10회선미만	50회선미만	50회선 이상
할인율	3%	5%	6%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ㅇ 예비회선 할인

구 분		용도설명	할인율
재해복구		. 기관의 재해대비 복구회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도 재해복구 훈련 등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40%
이중화	부하분산	. 기관에서 장애대비용으로 2개 회선을 운영하며 평상시 양쪽회선에 트래픽이 분산.전송되다가 장애 시는 정상회선으로 트래픽이 전부 전송됨 . 1회선이 적정대역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	
	예비백업	. 장애대비용으로 2개 회선을 주.예비 개념으로 운영 . 평상 시 예비회선에는 트래픽이 전송되지 않고 장애시에만 트래픽이 전송됨	40%
	기타	. 3중화 구성, 과부하 트래픽 수용 등 기관의 환경에 따라 특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협의

⁻ 예비회선은 장기계약, 다량이용 및 다회선이용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백본회선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ЭН	2]2]]			시	외		
구분	시내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2Mbps	198,000	627,000	875,000	1,396,000	1,740,000	1,947,000	2,106,000
45Mbps	1,405,000	3,829,000	5,105,000	7,751,000	9,275,000	10,118,000	10,924,000
100Mbps	2,003,000	5,219,000	7,288,000	11,617,000	14,227,000	15,946,000	17,219,000
155Mbps	2,704,000	7,365,000	9,819,000	14,908,000	17,589,000	18,661,000	18,709,000
200Mbps	2,848,000	7,699,000	10,309,000	15,729,000	18,556,000	19,717,000	19,866,000
300Mbps	3,170,000	8,439,000	11,398,000	17,552,000	20,703,000	22,064,000	22,438,000
400Mbps	3,491,000	9,179,000	12,487,000	19,376,000	22,851,000	24,411,000	25,010,000
500Mbps	3,812,000	9,920,000	13,576,000	21,199,000	24,998,000	26,758,000	27,582,000
600Mbps (622Mbps)	4,134,000	10,660,000	14,664,000	23,023,000	27,146,000	29,105,000	30,154,000
700Mbps	4,455,000	11,400,000	15,753,000	24,846,000	29,293,000	31,452,000	32,726,000
800Mbps	4,776,000	12,141,000	16,842,000	26,670,000	31,441,000	33,799,000	35,298,000
900Mbps	5,098,000	12,881,000	17,931,000	28,493,000	33,588,000	36,145,000	37,870,000
1Gbps	5,148,000	12,940,000	18,069,000	28,801,000	33,949,000	36,568,000	38,420,000
2.5Gbps	5,944,000	14,843,000	20,727,000	33,036,000	40,458,000	43,951,000	45,727,000
10Gbps	10,034,000	25,058,000	34,990,000	57,291,000	73,186,000	77,017,000	77,195,000

나) 이용요건

- ㅇ 중앙행정기관 : 본부와 1차 소속기관간 연결
 - (기관요건) 16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 이상에 거점이 있는 기관
 - . 거점의 적용기준은 정부조직법의 직제상 1차 소속기관으로 함

(산하기관, 연계기관 등 제외)

- (노드요건) 한개 지역 노드당 백본회선 대역폭의 합이 100M 이상이며, 노드 하위에 기본회선이 5개 이상인 경우
 - ※ 단, 노드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중 8개 이상 거점요건이 충족 안되는 기관은 백본서비스 요금을 이용하되 기본회선 할인율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 : 16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연결
 - 광역시청 ↔ 군.구간, 도청 ↔ 시·군간 연결하는 회선
 - . 사업소 등 시.도 본청 직속기관도 백본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

다) 거리/속도 제한

- 거리는 7단계, 속도는 2M부터 10G까지 15단계로 구성
 - 단, 중앙행정기관은 45Mbps이하 회선을, 지방자치단체는 2Mbps이하 회선에 대하여 음성전용으로 한정사용
- 회선속도는 사업자가 이용기관에 설치한 전송장비와 통신국사에 설치된 전송 장비가 논리적 채널을 기준

라) 이용요금 할인

ㅇ 장기계약 할인

구분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할인율	20%	30%

- 장기계약할인은 다량이용 또는 다회선이용 할인과 중복 적용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할인반환금을 부과합니다.
- * 할인반환금=(할인전 월이용료×사용개월수)×(계약기간 할인율-사용기간 할인율)
- ㅇ 다량이용 할인(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1억원이상	2억원이상	3억원이상	4억원이상	5억원이상	6억원이상	7억원이상
할인율	10%	20%	30%	40%	50%	60%	70%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10회선이상	20회선이상	30회선이상	40회선이상	50회선이상	60회선이상	70회선이상
할인율	10%	20%	30%	40%	50%	60%	70%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 **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시 다음 회선은 제외하여 산정(단, 다회선 이용에 따른 할인율 산정에는 제외 하되, 전체 할인율은 적용)
 - 중앙행정기관 100Mbps 미만, 지자체 45Mbps 미만 회선
 - 지방자치단체 본청 직속기관인 사업소 등의 회선
 - 동일한 상위 노드와 하위노드간의 백업/부하 분산용 회선

5) CCTV 전송서비스

가) 감면요금표

기공급회선)

				. , , , —
계약구분	구분	무약정	3년 약정	5년 약정
신규계약	수용구역내 (10Mbps)	180,000원	126,000원	80,000원 (72,000원)
(신규공급회선)	수용구역외 (10Mbps)	320,000원	224,000원	142,000원 (128,000원)
재계약 (5년이 경과된	수용구역내 (10Mbps)	180,000원	87,000원	55,000원 (50,000원)
(3년의 경파된	수용구역외	200, 000 6]	157 000 0	100,000원

320,000원

(단위:원,부가세 별도)

(90,000원)

157,000원

- ※ 5년 약정에 ()는 어린이보호용 CCTV전송서비스 이용요금 (어린이보호용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적용)
- ※ 장치사용료 : 8,000원/월, 설치비 : 10만원/1회(개통,설치변경,규격 변경 시 청구)

나) 이용요건

- CCTV서비스는 인입선을 공중(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설치비용 중 일부를 요금에 반영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입선을 지중화 하는 경우

(10Mbps)

- CCTV설치구역이 산간오지, 도서 해안지역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 o 고화질 CCTV 설치 등으로 회선용량이 부족하여 회선속도를 높일 경우 10Mbps당 계약요금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
- ○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약정 잔여기간 총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 (단, 공익사업으로 부득이 CCTV를 철거하는 경우 제외)

다) 이용요금 할인

ㅇ 다량이용 할인(월 납부액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5백~1천만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15억원
할인율	1%	2%	3%	5%	7%	8%	10%	15%

ㅇ 다회선이용 할인(이용회선수 기준 이용요금 할인)

구분	3회선이상~10회선미만	50회선미만	50회선 이상
할인율	3%	5%	6%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 다량이용 할인과 다회선이용 할인은 이용서비스별 요금납입 책임자를 기준으로 적용 (단, 고객요청에 의하여 여러 개의 요금청구서로 분리 청구되는 경우는 청구서 단위로 적용)
- 차.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의 학습 및 학사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한 회선으로 교육청 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 감면대상회선 :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와 교육청간을 연결하는 회선

ㅇ 전용회선 방식 감면요금표

(단위	의	부가세	用口/
(5171	774	一 フ[All	コイノ

구분	2].1]			시외			
(월액)	시내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512 Kbps	164,300	375,000	524,000	881,000	1,193,000	1,401,000	1,513,000
1 Mbps	269,500	498,000	695,000	1,170,000	1,584,000	1,859,000	2,008,000
2 Mbps	377,300	830,000	1,158,000	1,949,000	2,640,000	3,100,000	3,346,000
4 Mbps	400,000	1,071,000	1,505,000	2,540,000	3,438,000	4,033,000	4,361,000
5 Mbps	416,600	1,239,600	1,739,300	2,933,600	3,970,600	4,658,000	5,036,000
6 Mbps	433,300	1,408,300	1,973,600	3,327,300	4,503,300	5,283,000	5,711,000
8 Mbps	450,000	1,577,000	2,208,000	3,721,000	5,036,000	5,908,000	6,386,000
10 Mbps	524,300	1,830,000	2,559,000	4,311,000	5,835,000	6,846,000	7,400,000
15 Mbps	855,400	2,455,000	3,435,000	5,784,000	7,827,000	9,190,000	9,929,000
20 Mbps	1,009,800	3,085,000	4,312,000	7,258,000	9,823,000	11,532,000	12,458,000
25 Mbps	1,260,700	3,711,000	5,186,000	8,733,000	11,817,000	13,874,000	14,987,000
30 Mbps	1,511,600	4,341,000	6,062,000	10,206,000	13,813,000	16,218,000	17,516,000
35 Mbps	1,872,000	4,971,000	6,939,000	11,679,000	15,808,000	18,561,000	20,045,000
40 Mbps	1,965,600	5,596,000	7,816,000	13,154,000	17,804,000	20,903,000	22,574,000
45 Mbps	2,221,800	6,226,000	8,694,000	14,627,000	19,798,000	23,247,000	25,103,000
50 Mbps	2,266,000	6,512,000	9,118,000	15,300,000	20,706,000	24,297,000	26,250,000
55 Mbps	2,288,100	6,796,000	9,511,000	15,965,000	21,607,000	25,354,000	27,392,000
60 Mbps	2,484,700	7,075,000	9,905,000	16,630,000	22,506,000	26,411,000	28,532,000
65 Mbps	2,674,400	7,358,000	10,301,000	17,294,000	23,407,000	27,467,000	29,673,000
70 Mbps	2,899,000	7,642,000	10,695,000	17,959,000	24,307,000	28,526,000	30,813,000
75 Mbps	3,088,600	7,925,000	11,088,000	18,622,000	25,208,000	29,582,000	31,955,000
80 Mbps	3,313,300	8,209,000	11,484,000	19,287,000	26,109,000	30,639,000	33,095,000
85 Mbps	3,537,900	8,492,000	11,878,000	19,952,000	27,008,000	31,695,000	34,236,000
90 Mbps	3,727,600	8,776,000	12,272,000	20,615,000	27,909,000	32,752,000	35,376,000
95 Mbps	3,952,200	9,059,000	12,668,000	21,281,000	28,810,000	33,809,000	36,518,000
100 Mbps	3,975,200	9,338,000	13,061,000	21,944,000	29,710,000	34,867,000	37,660,000
155 Mbps	4,838,100	12,452,000	17,388,000	29,253,000	39,596,000	46,493,000	50,207,000
622 Mbps	5,329,800	13,855,000	21,715,000	35,606,000	50,669,000	61,614,000	66,466,000
1 Gbps	7,159,500	18,427,000	28,882,000	47,355,000	67,389,000	81,947,000	88,400,000

※ 전용 접속방식 : 512Kbps, 1Mbps, 2Mbps, 45Mbps, 155Mbps, 622Mbps

※ Ethernet 접속방식 : 2Mbps 부터 제공

- ※ 이용기간: 3년 장기계약으로 체결해야 함, 계약을 원치않을 경우에는 전용회선 또는 Metro Ethernet 회선의 요금을 적용함)
- 위약금(3년 장기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

구분	위약금
1 개월 ~ 18 개월내에 해지	6 개월 이용요금 + 설치비 보상
18 개월 ~ 36 개월내에 해지	3 개월 이용요금 + 설치비 보상

※ 단, 동일 문제사항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사업자에게 3회 이상 조치요구를 공문으로 했을 때 합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용기관이 위약금 보상없이 해지할 수 있음

카. 유비쿼터스 요금제

- 강면대상회선: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과 연계하여
 공공복지, 치안, 방범 등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회선
- ITS용 전용회선 서비스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분	시내		시 외							
(월액)	기대	30km 이내	50km 이내	100km 이내	200km 이내	300km 이내	300Km 초과			
9.6Kbps	41,500	127,800	178,500	284,000	343,800	385,200	416,100			
64Kbp	79,700	245,500	342,800	545,500	660,200	739,900	799,100			
256Kbp	149,700	461,200	643,900	1,024,700	1,240,100	1,389,700	1,501,000			
512Kbp	208,100	641,200	895,100	1,424,400	1,723,900	1,931,900	2,086,500			
2Mbps	362,800	1,117,900	1,560,500	2,483,300	3,005,500	3,368,100	3,637,700			

2. 요금할인

가. 다회선 할인

ㅇ 시내전용회선

회선수	30,001~40,000 회선	40,001~60,000 회선	60,001~150,000 회선	150,001 회선 이상
할인율	4%	5%	6%	15%

ㅇ 시외전용회선

회선수	5~9 회선	10 회선이상
할인율	5%	10%

ㅇ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케이티 전용회선을 기준회선수 이상으로 장기이용하는 경우, 해당 전용 회선료에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

ㅇ 적용방법

- 할인은 매월 1일 회선수 기준으로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함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나. 다량이용 할인

ㅇ 대상 및 할인율

납입요금	3 천만원~	5천만원~	2 억원~	5 억원~	20 억원이상
(월간)	5 천만원미만	2억원미만	5 억원미만	20 억원미만	
할인율	2%	3%	4%	5%	6%

ㅇ 적용방법

- 매월 시내,외 청구금액(증감액제외)을 기준으로 요금납입책임자별로 적용함
- 시내,시외회선 단위별로 회선전용료를 할인함
- 통신망 통합기관등 요금감면회선은 적용하지 않음
- 타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

다. 장기계약 할인

○ 대상회선 : 고속급(128Kbps)이상 회선

ㅇ 계약기간별 할인율

구 분	1년	3 년	5년
할인율	3%	5%	7%

ㅇ 적용방법

- 계약기간 변경시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 1 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 · 3~5 년 계약회선을 1~3 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때 위약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 · 장기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할인 반환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후 할인율 적용
 - · 이용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의사 표시가 없은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됨
 - ·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기간 할인율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기간중 해지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시외장기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 할인 반환금 산식=(할인전 월이용료 X 사용개월수) X (계약기간 할인율 사용기간 할인율)

라. 시외장기 할인 (2005.7.31 이전 가입회선에 한함)

ㅇ 대상 및 할인율

구 분	1년경과	3 년경과	5 년경과
할인율	1%	2%	3%

ㅇ 적용방법

- 기간산정은 개통일로부터 매월1일 기준으로 함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장기계약 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마. 예비회선 할인

○ 대상회선 : 56/64Kbps이상 회선

- ㅇ 적용 방법
 - 주회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장소기준 동일구간 또는 우회용 예비회선을 신청하는 경우
 - 요금감면 및 추가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 ㅇ 할인율 : 시내 40%, 시외 50%

바. 전용회선 모니터 고객 할인

ㅇ 개 요

주식회사 케이티 전용회선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니터 활동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회선에 대해 할인을 해주는 제도

- ㅇ 선정기준
 - 10회선 이상 또는 월 3천만원 이상 고객으로서 회선 운용실태 분석에 필요한 회선 또는 통신망의 고도화 등 품질개선에 관한 제안서 제출 고객
 - 기타 이용제도 및 불편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정보제공 고객
- 할인율 : 회선전용료의 20% 이내. 단, 6M 이상 회선은 20% 이내에서 추가로 할인